

# 보험료감액청구권에 관한 고찰\* \*\*

## - 상법 제647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 보 미\*\*\*

<차례> \_\_\_\_\_

I. 서 론	IV. 관련 사례
II. 상법 개정안의 내용	V. 상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고찰
III.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변동	VI. 결 론

주제어 : 보험료, 보험료 감액, 위험 감소, 위험의 변경, 상법 제647조

<국문초록> 현행 상법에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7조).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활성화 시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대한 법안의 개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감액청구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와 감액청구권에 대한 상법의 해석을 연구한 다음, 해외 입법례와 보험료 감액청구권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저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저자가 속한 기관의 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필자가 2017. 5. 29. 보험법학회 보험법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학술지형식에 맞추고 내용을 수정한 논문입니다.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 변호사님들과 학술지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문위원

- 논문접수일(2019.05.30), 심사개시일(2019.06.09), 게재확정일(2019.06.27)

## I. 서론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및 난소암의 가족력이 많아 유방암 유전인자 검사(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를 통해 BRCA1 유전자에 변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결국 2013년 예방적 절제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 전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7%에 달했지만 수술 후 확률은 5%로 하락하게 되었다. 수술 전 안젤리나 졸리가 암보험에 가입했었다고 상정해 보자. 그렇다면, 예방적 절제 수술로 인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전제로 산출된 보험료도 감액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보험료 감액 청구권에 관한 고찰과 개정안 발의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자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특별위험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료가 감액 될 수 있다'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감액된다'가 아닌 '감액될 수 있다'고 확률로 미룬 이유는 동법이 보험계약 체결 전 계약에 따라 특별한 위험을 예기한 경우로 감액청구의 사유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안젤리나 졸리가 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족력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절제 수술 이후에 위험이 소멸하였으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력도 없었고 유방암 유전인자 검사를 받지도 않아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보험회사나 안젤리나 졸리 모두 모르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특별한 위험으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험의 감소 내지 소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6년 한 해 민영보험 및 공제, 공영보험의 수입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체 수입보험료는 327조6천192억원으로 집계된다.<sup>1)</sup> 생명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4조3천103억원의 규모에 해당하며, 생명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영보험 시장

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17.12.31.

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3,362달러(USD)로 세계 16위, GDP 대비 수입보험료인 보험침투도는 12.1%로 세계 5위로 나타나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수익한 보험료는 위험 증가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는 많아도 인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금연 및 질병 완치 내지 직업이 보험상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변경될 경우 위험도 감소를 근거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적은 편이다. 2016년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 1억 5천 221만건 중 보험료 감액청구 건은 140만건(0.95%)에 불과했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활성화 시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대한 법안의 개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감액청구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와 감액청구권에 대한 상법의 해석을 연구한 다음, 해외 입법례와 보험료 감액청구권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순서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 II. 상법 개정안의 내용

수지상등의 원칙상 급여·질병이나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회사에 보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보험회사의 정보 전달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인식되어 지는

2)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삼성화재가 체결·유지 중인 계약 1천 338만건 중 30만 7천683건(2.2%), 현대해상 956만591건 중 17만5천102건(1.8%), 동부화재 1천 21만 7천 41건 중 1만510건(0.01%)만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현대경제신문, “유명무실 보험료 감액청구권, 법으로 보장한다”, 2017.3.21.)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대 국회에서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 액을 산정한 것에 한하지 않고, 모든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감액 청구를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sup>3)</sup>. 개정안은 특히,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의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이 감소 또는 소멸한 모든 경우를 보험료 감액 청구의 사유로 변경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이 위험의 '소멸'에 한정된 것과 달리 소멸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의 '감소'의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사유 발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보험계약자가 감액 청구를 하였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보험료 감액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보험료 감액의 시기를 보험계약자의 감액 청구 시로 명문화하였다.

<표1> 민병두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b>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b>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lt;후단 신설&gt;</p>	<p><b>제647조(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b> -----위험을----- ----- 소멸 또는 감소한----- ----- 이 경우 보험자는 감액 청구를 거절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료의 차액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p>

3)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182, 제안일자 2017. 3. 15.

### Ⅲ.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변동

#### 1. 보험료의 의의 및 산출 방법

##### (1) 의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638조).<sup>4)</sup> 즉,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인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데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대가관계를 이룬다.<sup>5)</sup> 이로 인해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만드는 요소에 해당하게 되며, 쉽게 보험 상품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sup>6)</sup> 보험제도는 보험금액의 총액과 보험료의 총액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립되는 중요한 의무이며,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sup>7)</sup>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그 위험이 발생하여 손실을 야기한 경우 보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보상기금을 만들어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제도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장차 담보된 손실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게 된다.<sup>8)</sup>

4)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피산 또는 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한다(제639조 제3항 단서)

5) 장덕조, 「보험법(제3판)」, 법문사, 2016, 170면 ; 박세민,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15, 128면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24면, 294면;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10판)」, 2016, 100면.

6) 박세민, 위의 책, 128면.

7) 박세민, 앞의 책, 271면.

8) 박은경, 「보험법 판례강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17-18면.

## (2) 보험료의 산출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개연성에 의하여 산출된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비용, 인건비, 그 밖의 비용으로서 부가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하게 되며, 양자를 합산한 것이 영업보험료에 해당한다.<sup>9)</sup>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는 위험의 크기를 산정한 후, 위험의 인수 여부 및 인수할 경우의 보험료를 정하게 되는데,<sup>10)</sup> 보험료의 액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 범위, 예상 피해액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sup>11)</sup> 따라서 보험료액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기준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sup>12)</sup>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업법 제176조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순보험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17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4호에 따라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업무를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으면 가입자의 저항과 사회적 비판의 문제가 초래되며, 이와 반대로 보험자의 과당경쟁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보험경영의 안정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위험단체 내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출 되어야 한다.<sup>13)</sup>

9) 박세민, 앞의 책, 2015, 128면 ; 최준선, 앞의 책, 100면.

10) 박세민, 앞의 책, 302면.

11) 김성태, 앞의 책, 2001, 294면.

12) 장덕조, 앞의 책, 법문사, 2016, 171면.

13) 김성태, 앞의 책, 124-125면.

## 2. 보험료 감액청구

### (1) 취지

보험료의 액은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로 변경될 수 없다.<sup>14)</sup> 그러나, 상법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7조).<sup>15)</sup>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액에 반영되는 사고발생 위험률이 보험단체의 평균 위험률 보다 높은 위험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위험률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에 예기하였던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는 사정이 생긴 후에도 여전히 높은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의 액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에 그 취지가 있다.<sup>16)</sup> 즉, 특별한 위험이 소멸한 후에 그 크기에 대응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 (2) 감액청구권의 성질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의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보험계약자의 재판상, 재판 외의 감액청구에 의하여 감액의 효력이 생긴다.<sup>17)18)</sup>

### (3) 감액청구의 효력 및 입증책임

보험계약자의 감액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장래에 향하여 보험료를 적당한

14) 김성태, 앞의 책, 308면.

15) 또한,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때(상법 제669조 제3항)에도 보험료의 감액 청구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보험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16) 주식 상법[보험(1)](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17) 주식 상법[보험(1)](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165면.

18) 청구권 행사의 방식 및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하면 된다(주식 상법 [보험(1)](제2판, 위의 책, 165-166면.)

금액으로 감액할 의무를 진다.<sup>19)20)</sup> 즉, 보험계약자의 감액 청구에 의한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긴다. 그러므로 감액청구시에 속한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다음의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부터 감액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sup>21)</sup> 한편, 종래의 보험료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고율로 책정되었다는 것과 그 특별위험의 소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sup>22)</sup>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액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제669조).

#### (4) 특별한 위험의 소멸

특별한 위험의 소멸에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 기술상 그 위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sup>23)</sup> 여기서 특별한 위험이란 보험단체의 평균위험을 보다 높은 위험률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할증 보험료를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인수하게 되었지만, 위험물의 보관이라는 상황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위험의 정도를 참작해서 특별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험의 감소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sup>24)</sup>

#### (5) 보험료 감액에 대한 실무의 적용

현재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위험이 감소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차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 후 약관에서 구체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면서, 보험료의 감액과 증액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실손의

19) 주식 상법[보험(1)](제2판), 앞의 책, 166면.

20) 보험자의 감액이 적절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주식 상법[보험(1)](제2판), 앞의 책, 166면.)

21) 김성태, 앞의 책, 309면.

22) 최준선, 앞의 책, 2016, 147면 ; 박세민, 앞의 책, 274면.

23) 주식 상법[보험(1)](제2판), 앞의 책, 167면.

24) 大串淳子,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8, 65面.

료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화재보험 표준약관 모두 공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별 보험 분야에 따라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에서는 ①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②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의 제거(반대해석)를<sup>26)</sup>,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2조<sup>27)</sup>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sup>28)</sup>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변경의 경우, 예를 들어 영업용 운전자가 자가용 운전자로 전환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용자가 이를 폐기한 경우를 그 구체적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제16조<sup>29)</sup>에서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나 용도

- 25) 구체적인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표준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함
- 2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27)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8)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9)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변경의 경우를 해당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 3. 보험료 증액청구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2조 제2항). 또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35조). 이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개연율에 의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 위험상태가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는 종래의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단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하여진 규정이다.<sup>30)</sup> 여기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변경·증가된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거나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서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특히 '변경의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예정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으로 생기는 위험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를테면 화재보험 가입 후, 인접하고 있던 소방서가 이전하고 주유소가 들어선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sup>31)</sup>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0) 최준선, 앞의 책, 159면.

31) 김성태, 앞의 책, 313-314면.

## IV. 관련 사례

### 1. 금융분쟁조정사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 시 보험료 감액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안이 있다.<sup>32)</sup> 보험계약 체결 당시 B형 간염 진단으로 할증보험료를 납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B형 간염 항체가 형성되어 항체 생성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의 환급을 인정한 사례이다. 피신청인인 보험회사 측은, 보험료는 최초 보험가입시 적용된 예정 기초율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당시 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보험계약 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초 계약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정위원회에서는 항체 생성으로 인하여 위험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약관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sup>33)</sup>에서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둘째, 피신청인이 위험사정의 소멸로 분류하여 U/W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법 제647조에 근거하여 B형 간염 항체 생성은 위험이 '감소된 것'이라기보다는 '소멸되었다'고 해석되며, 셋째, B형간염 보균 여부는 당해 보험 계약 체결당시 특별조건부인수기준에 의해 할증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장래에 B형 간염의 항체생성이 소멸되는 등의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그 시점에 할증 보험료의 책정을 다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할증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결정일자 : 2010. 3. 23. 조정번호 : 제2010-29회)

33) 동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는 ①보험종목,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보험가입금액, ⑤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⑥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 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제3항은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계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계약환급금)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2. 해외 입법례

### (1) 일본

#### 1) 규정의 변화

일본은 위험의 감소에 관한 규정의 변화가 있었다. 메이지 23년(1890년) 구(舊) 상법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지급기간 2회 이상의 보험료를 선급한 경우에 위험의 감소가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상환할 것을 요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메이지 32년(1899년) 상법은, 구상법과는 입장을 바꾸고 계약상 특별하게 고려한 특별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자에게 장래를 향하여 보험료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손해보험에 관한 제646조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참작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장래를 향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것을 생명보험계약에도 제683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헤이세이 20년(2008년) 현행 보험법은 다시 메이지 23년 구 상법에 가까운 입장으로 돌아가, 위험의 감소에 관한 규율은 특별위험을 고려한 경우에 한정될 필연성은 없으므로 보험법은 이를 확대하여 위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sup>34)</sup>

현행 보험법 제11조, 제48조, 제77조에서 손해·생명·상해질병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장래를 향하여 보험료에 대하여 감소 후의 그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료에 이를 때까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5)</sup>

34)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 解説生命保險, 傷害疾病定額保險」, 有斐閣, 2010

35) 일본 보험법 제11조

損害保險契約の締結後に危険が著しく減少したときは、保險契約者は、保險者に對し、將來に向かつて、保險料について、減少後の当該危険に對應する保險料に至るまでの減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 보험법 제48조

生命保險契約の締結後に危険が著しく減少したときは、保險契約者は、保險者に對し、將來に向かつて、保險料について、減少後の当該危険に對應する保險料に至るまでの減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 보험법 제77조

## 2) 개정의 취지

2008년 보험법 개정 시 (i) ‘특별한 위험’인 것은 어떤 때인지 불명확하다는 점과, (ii) 위험의 증가에 관한 법률(일본 보험법 제29조, 제56조, 제85조)과의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료의 감액 청구 가능한 경우를 위험정도를 참작해서 특별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사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감소 후의 위험에 알맞은 보험료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현행 보험법은 일본 상법 제646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일반적인 규율로 한 보험료 감액청구를 인정하게 되었다.<sup>36)</sup>

## 3) 규정의 성질

개정 전 상법에 의한다면 일반적인 위험이 감소한 경우 약관상 규정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감액을 청구 받았을지라도 그 의무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법 시행 후에는 이러한 해석은 성립하지 않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위험의 감소가 생기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약관에 규정한 경우에도 본조에 반한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로 된다(일본 보험법 제12조, 제49조, 제78조).<sup>37)</sup>

## (2) EU

EU 보험계약법은 ‘위험 감소’ 시 보험료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보험계약법 원칙(PEICL :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제4-301조는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비례적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들이 보험료 비례 감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2개월 이내에 서면통지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

傷害疾病定額保險契約の締結後に危険が著しく減少したときは、保險契約者は、保險者に對し、將來に向かつて、保險料について、減少後の当該危険に對應する保險料に至るまでの減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6) 大串淳子, 앞의 책, 65~66面.

37) 大串淳子, 앞의 책, 66面.

한다.<sup>38)</sup> 우리법이 특별한 위험의 소멸 시 감액의 청구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 것과 달리, 유럽보험계약법원칙은 이에 더 나아가 당사간의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 (3) 독일

독일 보험계약법 제41조는 “특정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해 더 높은 보험료의 납입에 합의하고 당해 사정이 보험계약자의 청약이나 계약체결에 따라 소멸했거나 의미가 없어진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감액에 대한 요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보험료의 적정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통지로 더 고액의 보험료가 산정이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sup>39)</sup>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특정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보험료의 감액을 인정함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를 상정한 우리법과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 상법 제647조에서는 보험료 감액청구의 요건으로서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보험계약법 제41조에서는 “...당해 사정이 .....당해 특약을 체결한 후에 소멸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상실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위험사정의 소멸”(Wegfall von Gefahrumstände) 및 “위험의

38) 유럽 보험계약법 원칙

Article 4-301 Consequences of the Reduction of Risk

- (1) If there is a material reduction of risk, the policyholder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a proportionate reduction of the premium for the remaining contract period.
- (2)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proportionate reduction within one month of the request, the policyhold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by written notice given within two months of the request.

39)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41조

§ 41 Herabsetzung der Prämie

Ist wegen bestimmter gefahrerhöhender Umstände eine höhere Prämie vereinbart und sind diese Umstände nach Antragstellung des Versicherungsnehmers oder nach Vertragsschluss weggefallen oder bedeutungslos geworden, kann der Versicherungsnehmer verlangen, dass die Prämie ab Zugang des Verlangens beim Versicherer angemessen herabgesetzt wird. Dies gilt auch, wenn die Bemessung der höheren Prämie durch unrichtige, auf einem Irrtum des Versicherungsnehmers beruhende Angaben über einen solchen Umstand veranlasst worden ist.

감소”(Gdfahrinderung)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sup>40)</sup>는 점, 보험료 감액에 대한 요구 시점에서부터 감액시점을 명문화 한 측면에서 우리법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 (4) 프랑스

프랑스도 보험계약법(Code des assurances) 제113-4조에서 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 요구를 인정한다. ‘계약기간 중에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료 금액의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는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보험자는 위험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분담금의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험감소의 사유는 일본 보험법과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고, 해지 가능한 것은 유럽보험계약법 원칙과 같다. 다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달라진 경우에 생명보험 그리고 질병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부 보험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V. 상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고찰

### 1. 모든 위험의 경우로 확대되는 경우

#### (1) 친성하는 견해<sup>41)</sup>

① 현행 상법 제652조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위험의 ‘변경, 증가 시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 및 보험료 증액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전제로, 위험변경에 대한 보험료 변동청구권으로 보험자의 증액청구권만 규정할 뿐 소비자의 감액청구권을 법정하지 않은 것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원칙 및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고 소비자의 감액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

40) 주석 상법[보험(1)](제2판), 앞의 책, 167면.

4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권고안, 2016.

장한다.

② 보험약관에서 보험료 감액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법적 권리로 인정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계약상 권리가 다 보니 약관에 위험감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구체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③ 또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와 같은 유사보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표준약관 및 행정지도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법에서 소비자의 감액청구권을 규정할 필요를 역설한다.

## (2) 반대하는 견해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상법 제647조는 현행 보험약관에 반영되어 운용 중이므로 굳이 법률에 확정할 필요 없이도 보험계약자에게 인정되어 있다.<sup>42)</sup> 따라서, 현행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sup>43)</sup>

②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들의 위험 발생 가능성(위험률)을 측정하여 산출하는데, 정확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서는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 계약자 확보를 통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개정안처럼 일반적 위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위험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대수의 법칙을 활용하는데 곤란하다.<sup>44)</sup>

③ 특별한 위험의 소멸 여부와 달리 일반적인 '위험' 자체의 '감소 또는 소멸'은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험이 감소 또는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감액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위험의 감소 또는 소멸 사실 자체와 위험의 감소를 반영한 구체적 보험료 감액분 산정에 관해 보험계약자·보험회사 간 분쟁 증가를 예상한다.<sup>45)</sup> 즉, 위험이란 의미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감소의 범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감소 및 보험료 감액여부를 놓고 분쟁발생이 필연적으로 예측되는

42) 손해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2017.3.

43) 생명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발의) 관련 생명보험업계 의견, 2017.3.

44) 손해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2017.3.

45) 손해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2017.3.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등이 유의미하지 않은 위험감소를 내세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계약자-보험회사 간 분쟁 빈발과 이로 인한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저하를 우려한다. 예를 들어, 생명·질병·상해보험에서 몸무게 일부 감량, 혈압수치 일부 하락 간수치 일부 개선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 가능한 가변적 수치변화에 기인하면 위험률 측면에서 보험료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위험이 감소·소멸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기 입증도 곤란하다고 한다.<sup>46)</sup> 따라서, 분쟁유발요소 최소화의 필요성을 위해서 보험료 감액청구의 사유를 모든 위험의 경우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 (3) 소결

위험이 감소되는 상태가 유동적일 경우, 보험료 감액을 인정하는 사례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정착되는 사유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면, 반대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즉, 1회성이나 일시적인 위험의 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몸무게 일부 감량, 혈압수치 일부 하락 간수치 일부 개선 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수치변화는 지속·정착되는 상태가 아니라 볼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건강상태의 변동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바, 건강상태를 개선했다고 해도 보험료가 감액되는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sup>47)</sup> 그리고 이를테면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을 상시 복용하는 것과 같이 보험료 산정 시 위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까지 보험료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위해, 필자는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일본의 보험법과 유사하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의 감소에 있어서 보험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감소에 대해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 이것에 대응하여 보험자의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다시 보험계약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46) 생명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발의) 관련 생명보험업계 의견, 2017.3.

47) 大串淳子, 앞의 책, 66면.

경우에 어떠한 경우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문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험의 감소는 위험의 증가와 표리일체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문제라도 위험의 감소 또는 증가에 의해 현실의 보험료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8)</sup> 판례도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sup>49)</sup>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험증가와 표리관계인 위험의 감소도 이와 유사하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정하게 된다면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거와 같이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유도 비교적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보험료 감액 시기의 문제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보험료감액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긴다. 그러므로 감액청구 시에 속한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음의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부터 감액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이 감소되었을 때 고려하여야 할 시점은 (i) 위험 감소가 발생한 때, (ii) 보험계약자가 위험 감소 사유 있음을 보험자에게 청구한 때, (iii)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감액청구 시 다음의 보험료 기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감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험의 감소 시와 보험료 감액 청구 시에 현저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보험료 액의 차이가 커진 경우,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감액 청구를 했으나 보험료불가분 원칙에 따라서 다음의 보험료기간과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의 보험료에 대하여 감소한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의 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8) 大串淳子, 앞의 책, 66面.

49) 대법원 1997.9.5.선고, 95다25268판결 등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보험료는 지참채무로 인정되고 있으며,<sup>50)</sup>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사보험에서 선급이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계약성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므로<sup>51)</sup> 통상의 경우라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먼저 지급되고 난 후 위험의 감소 사유에 해당하고, 위험의 감소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지 및 보험자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부터 보험료 감액의 시기를 인정할 것인지는 반환받는 보험료 액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정 전 상법 제646조와 개정 보험법은 동일한 형태에 있지만 구체적인 효과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종래에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상 청구 시에 속하는 보험료기간의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동 원칙의 채용여부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청구 시부터 보험료 감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감액청구를 한 때의 보험료기간의 미경과기간에 상당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그 액에 관해서 합리적인 약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52)</sup>

### 3. 위험 증가 조문과의 정합성

#### (1) 문제점

독일 보험계약법도 특별한 위험의 감소와 소멸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멸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감액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53)</sup> 독일 보험계약법 제41조에서 “위

50) 이행지(지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이다.

51) 김성태, 앞의 책, 296면.

52) 大串淳子, 앞의 책, 66면.

53) 주석 상법(보험(1))(제2판), 앞의 책, 167면.

험사정의 소멸”(Wegfall von Gefahrumstände)과 “위험의 감소”(Gdfahrminderung)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료 감액에 대응한 보험료 증액의 사유를 우리법과 달리 “위험 증가”(Gefahrerhöhung)<sup>54)55)</sup>에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법 제652조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할 때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증액할 수 있는 사유에 ‘위험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sup>56)</sup>

상법 제652조 위험의 ‘변경’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는 동법의 ‘변경’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하게 되는데 제652조에 이미 ‘증가’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변경이란 위험의 ‘감소’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sup>57)</sup>

## (2) 소결

상법 제652조의 위험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요구되는 근거는 첫째, 보험료 산출과 보험의 단체성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 둘째, 일반 계약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석된다.<sup>58)</sup>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성립 당시에 존재한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변경하거나 또는 폐

54)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23조 위험증가

55)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25조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증액

56) 상법 제653조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험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57) 최준선, 앞의 책, 161면 ; 박세민, 앞의 책, 307면.

58) 박세민, 앞의 책, 304면.

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산출과 보험의 단체성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과, 계약 체결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의 원칙은 위험의 감소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증가와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수범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상법 제652조 상 '변경'이란 표현을 삭제하면서 감액 청구의 사유로 '일반적인 위험의 감소'도 포함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 VI. 결 론

상법은 제647조에서 특별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활성화 시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는 특별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의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이 감소 또는 소멸한 모든 경우를 보험료 감액 청구의 사유로 변경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이 위험의 '소멸'에 한정된 것과 달리 소멸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의 '감소'의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사유 발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보험계약자가 감액 청구를 하였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보험료 감액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보험료 감액의 시기를 보험계약자의 감액 청구 시로 명문화하였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흡연량, 주량 그리고 직업군과 건강의 차이(인보험의 경우)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처럼 계약 이후에도 애초에 예정했던 사항이 아닌 사유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곧 보험사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계약자 스스로의 개선을 통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률을 낮출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무사고, 주행거리 감소, 대중교통 이용, 블랙박스 장착 시 할인하는 제도 같은 경우 보험사고의 위험을 낮추어 보험금 지급의 유인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보험료 감액 청구의 '권리'로서의 보장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보험료 할인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개발, 안내와 홍보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개정안은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험자의 숨어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이며, 만일 국회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된다면 일부 문구에서 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까지 그 기여가 클 것이라 생각 된다.

##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15.
- 박은경, 「보험법 판례강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 장덕조, 「보험법(제3판)」, 법문사, 2016.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10판)」, 2016.
- 
- 주석 상법[보험(1)](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주석 상법[보험(1)](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 大串淳子,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8.
-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 解説(生命保險, 傷害疾病定額保險)」, 有斐閣, 2010.
- 
-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182. 제안일자 2017. 3. 15.
- 손해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2017.3.
- 생명보험협회 의견서, 상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발의] 관련 생명보험업계 의견, 2017.3.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권고안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17.12.31.
- 현대경제신문, '유명무실' 보험료 감액청구권, 법으로 보장한다, 2017.3.21.
- 대법원 1997.9.5.선고, 95다25268판결

<Abstract>

**A Study on the Claims for the Reduction of  
Insurance Premiums**  
**- with a focus on Article 647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s -**

**Lee, Bo Mi**

Premiums are determined by the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techniques to reflect the risks. The sum of premiums paid by the risk group and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paid by the insurer shall be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pensating benefits and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But,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if the alteration or decrease of risks happen, the balance between the premium and magnitude of risk is upset. The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alteration in the risk, the premium change can be claimed.

However, it is only possible if the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determines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in anticipation of the special risk, the policyholder may request the reduction of the insurance premium after the expected risk of the insurance expires.

Recentl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itiated a new amend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premium reduction. The amendment extends not only to the disappearance of specific risks but also to the reduction of risks.

In this paper, I will especially review about decrease of risk and §647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s.

**Key Words** : Premium, Premium Abatement, Decrease of risk, Alteration of risk, Article 647 of the Commercial Law